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업인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도시 근교의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의 증설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수단에 ‘토지이음’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만 공장 등의 건축이 허용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 제31417호(2021.1.26.)이 일부 지자체에서 2024.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도입(안 제84조제8항)

- 1)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근교와 인접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유통에 유리하나 낮은 건폐율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설치 규모가 제한됨
- 2) 관할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설

- 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의 건폐율을 40퍼센트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나. 입안 중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 추가 (안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 1) 입안 중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으로 지자체 공보·홈페이지, 주요 일간지 등이 활용되고 있음
- 2)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접속가능한 ‘토지이음’을 공고수단에 추가하여 주민 접근성·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중 “해당”을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해당”으로 한다.

제8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녹지지역에”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로, “생산녹지지역이”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이”로, “이하의”를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의”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1호라목(2) 개정규정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개정규정 중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개정규정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개정규정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종전”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 · 고시되는 날 전까지 종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 ·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 · 고시되는 날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 · (2)의 개정규정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생략)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1.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나.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해당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⑦ (생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u>생산녹지지역</u> 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u>생산녹지지역</u> 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	⑧ ----- ----- <u>생산녹지지역</u> 또는 <u>자연녹지지역</u>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u>이하</u>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⑨ (생략)	----- ----- <u>생산녹지지역</u> <u>또는 자연녹지지역</u> ----- ----- ----- ----- ----- -----<u>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의</u>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09